

특허협력조약

발신: 국제조사기관

PCT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PCT규칙 43의2.1)

수신:  
김순영  
대한민국 03151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58 석탄회관빌딩 10층

발송일 (일/월/년) 2018년 12월 19일 (19.12.2018)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류참조기호  
OF18P107PCT

추가적인 조치  
아래 2를 참조

국제출원번호  
**PCT/KR2018/010814**

국제출원일 (일/월/년)  
2018년 09월 14일 (14.09.2018)

우선일 (일/월/년)  
2017년 09월 29일 (29.09.2017)

국제특허분류(IPC)  
**A61K 8/06(2006.01)i, A61K 8/02(2006.01)i, A61K 8/89(2006.01)i, A61Q 19/00(2006.01)i**

출원인  
(주)아모레퍼시픽

1. 본 견해서는 다음 기재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 제1기재란 견해서의 기초
- 제2기재란 우선권
- 제3기재란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 부작성
- 제4기재란 발명의 단일성 결여
- 제5기재란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PCT규칙 43의2.1(a)(i)), 이를 뒷받침하는 인용문헌 및 설명
- 제6기재란 특이 인용문헌
- 제7기재란 국제출원의 흠결
- 제8기재란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

2. 추가적인 조치

국제예비심사가 청구되면, 본 견해서는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의 견해서로 간주될 것입니다. 다만, 출원인이 본 기관 이외의 기관을 IPEA로 선택하고, 그 선택된 IPEA가 PCT규칙 66.1의2(b)에 따라 본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가 위와 같이 간주되지 않을 것임을 국제사무국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본 견해서가 상기와 같이 IPEA의 견해서로 간주되는 경우, 출원인은 서식 PCT/ISA/220의 발송일로부터 3월 또는 우선일 부터 22월 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전에 의견서 및 보정서(해당하는 경우)를 IPEA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선택사항에 대하여는 서식 PCT/ISA/220에 대한 안내문을 참조하십시오.

ISA/KR의 명칭 및 우편주소  
대한민국 특허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4동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팩스번호 +82-42-481-8578

본 견해서의 완료일  
2018년 12월 19일 (19.12.2018)

심사관  
이기철  
전화번호 +82-42-481-3353



제1기재란 본 견해서의 기초

1. 언어와 관련하여, 본 견해서는 아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출원시의 언어로 된 국제출원

국제조사를 위하여 \_\_\_\_\_ 로 번역되어 제출된 국제출원의 번역문  
(PCT규칙 12.3(a) 및 23.1(b))

2.  본 견해서는 PCT규칙 91에 따라 당해 기관이 허가하였거나 당해 기관에 통보된 **명백한 잘못의 정정**을 고려하여 작성되었습니다(PCT규칙 43의2.1(a)).

3.  국제출원에 게시된 핵산염기 및/또는 아미노산 서열과 관련하여, 본 견해서는 아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a.  아래의 형태로 출원시 국제출원의 일부를 구성하는 서열목록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

서면 혹은 이미지 파일

b.  PCT 규칙 13의3.1(a)에 따라 국제출원과 함께 국제조사만을 목적으로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의 형태로 제출된 서열목록

c.  국제조사만을 목적으로 국제출원일 이후에 아래 형태로 제출된 서열목록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 (규칙 13의3.1(a))

서면 혹은 이미지 파일 (규칙 13의3.1(b) 및 시행세칙 713)

4.  추가로 서열목록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버전이나 사본이 제출된 경우, 후속 버전 또는 추가된 사본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가 출원시 출원의 일부를 구성하는 정보와 동일하거나 또는 출원시의 게시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진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5. 추가 의견:

제5기제란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PCT규칙 43의2.1(a)(i)), 이를 뒷받침하는 인용문헌 및 설명

1. 견해

신규성 (N)	청구항	1-12	있음
	청구항	없음	없음
진보성 (IS)	청구항	없음	있음
	청구항	1-12	없음
산업상 이용가능성 (IA)	청구항	1-12	있음
	청구항	없음	없음

2. 인용문헌 및 설명:

참고한 인용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D1: KR 10-2010-0016340 A (아르끄마 프랑스) 2010.02.12

D2: KR 10-2012-0023365 A ((주)아모레퍼시픽) 2012.03.13

1. 신규성 및 진보성

1.1. 청구항 1

본 국제출원과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로 여겨지는 인용문헌 D1에는 (i) 수상, (ii) 지방상 및 (iii) 2개 이상의 상이한 단량체의 중합으로부터 유래된 코폴리아미드 분말을 포함하는 분말상을 포함하는 화장 조성물로서, 수상 및 지방상이 분리된 수-중-유 유제 또는 2-상 조성물인 조성물을 제시하고 있으며(요약, 청구항 1 참조), 수상 중 지방상의 분산을 촉진시키는 음이온성, 비-이온성 또는 양성 유형 계면활성제(일반적으로 친지성)를 포함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고, 상기 계면활성제로 소르비탄 세스퀴이소스테아레이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단락 [0065], [0066] 참조).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은 인용문헌 D1에 P/O/W형 에멀전인 프라이밍 화장료 조성물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화장료에서 분말이 유상에 함유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상기 차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문헌 D1의 기술 내용으로부터 적절히 적용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청구항 1은 인용문헌 D1에 의해 PCT 제33조(3)에 따른 진보성이 없습니다.

1.2. 청구항 2-7 및 11

청구항 2 및 3의 추가적 특징에 대하여, 인용문헌 D1은 연속 수상 유형의 조성물에 있어서 물의 지속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증점제를 첨가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단락 [0005], [0006] 참조), 점증제의 함량은 용이하게 최적화 가능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추가 기재란에 계속

**제8기재란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

청구범위, 발명의설명 및 도면의 명료성에 관하여 또는 청구범위가 발명의설명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 청구항 9는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구상 파우더는"이라고 기재하고 있지만, 청구항 1에는 "구상 파우더"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상기항이 지시하는 바가 불명료하므로, 청구항 9는 PCT 제6조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습니다. (본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는 청구항 9가 청구항 8의 "구상 파우더"를 인용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작성하였습니다.)

추가 기재란

이전 기재란의 공간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제5 기재란의 연속

청구항 4, 5, 7, 11의 추가적 특징은 인용문헌 D1에 조성물이 69 내지 95%의 수상, 40 내지 1%의 지방상, 0.5 내지 10%의 계면활성제, 및 1 내지 20%의 분말상을 포함하는 것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 가능한 사항입니다(청구항 12, 16 참조).

청구항 6의 추가적 특징에 대하여, 인용문헌 D1은 계면활성제로 소르비탄 세스퀴이소스테아레이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단락 [0065], [0066] 참조).

따라서, 청구항 2-7 및 11은 인용문헌 D1에 의해 PCT 제33조(3)에 따른 진보성이 없습니다.

1.3. 청구항 8-10

청구항 8-10의 추가적 특징은 인용문헌 D1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동일 기술분야의 인용문헌 D2에 폴리메틸메타아크릴레이트와 같은 구상 파우더 25~35중량% 및 판상 파우더 25~30중량%를 포함하는 메이크업 화장료 조성물을 제시하고 있는바(청구항 1 및 4 참조), 통상의 기술자라면 인용문헌 D2의 구상 파우더 및 판상 파우더를 인용문헌 D1의 분말상에 적용하여 청구항 8-10의 발명을 도출하는 것은 특별한 어려움이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8-10은 인용문헌 D1 및 D2의 결합에 의해 PCT 제33조(3)에 따른 진보성이 없습니다.

1.4. 청구항 12

청구항 12에 기재된 발명은 청구항 1의 프라이밍 화장료 조성물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내용에서 청구항 1의 프라이밍 화장료에 대한 내용은 상기 1.1.절에 기재된 취지가 적용되고, 제조방법에 대한 내용은 인용문헌 D1에 수상을 조합하고 가열하는 단계; 지방상을 조합하고 가열하는 단계; 격렬히 교반하면서 지방상을 상기 수상에 천천히 첨가하여 유제를 형성하는 단계; 냉각 후, 교반하면서 분말을 첨가하는 단계로 이루어진 화장 조성물 제조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단락 [0102] 참조), 수상은 증점제 등을 포함할 수 있고(단락 [0063] 참조), 수상 중 지방상의 분산을 촉진시키는 친지성 계면활성제를 포함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단락 [0065], [0066] 참조)을 고려하였을 때, 통상의 기술자가 적절히 적용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청구항 12는 인용문헌 D1에 의해 PCT 제33조(3)에 따른 진보성이 없습니다.

2. 산업상 이용가능성

청구항 1-12의 발명은 PCT 제33조(4)에 따라 산업상 이용가능합니다.